

의안번호	2217806
의 퇴 인	서미화의원
회 답 일	2026.6.11.
추계번호	26C15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4조 (보상금)	○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현행)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4조 (보상금)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보상금(안 제54조)

-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뿐만 아니라 발각된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의 규모, 지급 건수 및 지급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현행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에서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범죄 발각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또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범위 및 수준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재 보상금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추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있음

[표 1] 마약류보상금 지급기준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자료: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nabo.go.kr